

「'17년도 봉제교육 및 사업운영」에 따른 위탁운영 용역

과업협상서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근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대표자 신종화

「'17년도 봉제교육 및 사업운영」에 따른 위탁운영 용역 협상서

I 사업소개

I 협상개요

가. 사업명 : 「'17년도 봉제교육 및 사업운영」위탁 용역

나. 사업목적 : 봉제기술의 강점을 살리고 봉제산업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술훈련을 통한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산업내 기술인력 부족 해소를 통한 제조 인프라 구축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7년 12월 31일(일요일)까지

라. 협상금액 : 14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바. 추진경과 : 1, 2차 유찰, 3차 적격심사('17.1.25) 통과

사. 협상대상자 :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대표자 신종화)

- 사업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서울디자인지원센터 4층

아. 주요 사업내용 및 범위

1) 교육 프로그램 기획

□ 봉제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2)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봉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전문성을 갖춘 봉제 현장경력을 소유한 강사운영

- 청년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교육관련 포럼 등 자체 네트워킹 강화)운영

- 현장 맞춤형 기술 교육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 현장 모니터링 및 기록(운영결과 사이트 공지)

3)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기관협회 단체 및 관련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블로그, SNS)를 활용한 활성화 방안 모색

4) 대외홍보

- 사업중 일부 사례를 선택, 시기 및 매체에 대한 계획운영
- 5) 홍보물 제작 배포를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
- 6) 사업진행 관련 제작물 아카이빙 방안 모색
- 7) 기타
 -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과정에서 당초 예정된 일시·참여대상 등 변동이 생길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후 과업 수행
 - 주간·월간·최종결과와 관련 해당 사안의 기간에 협의 진행 및 관련 사항 공유
 - 월례보고(프로그램 진행 상황 및 결과) 월 1회
 - 주간보고(프로그램 진행 상황 및 결과) 주 1회
 - 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평가회의 1회 진행
 - 최종 제출물(사업결과 보고서 및 사업 진행에 따른 자료) 일체, 용역 정산 보고서

II 추진 경과

가. 적격심사 평가

- 1) 일 시 : 2017. 1. 25(수) 17:00 ~ 18:00
- 2) 장 소 : 유어스(U.S)상가 4층 대회의실
- 3) 평가위원 : 7명
- 4) 평가 결과 : 적격

구 분	배 점	제 안 업 체	
		001사 (수의계약 적격여부 평가)	비 고
객관적 평가	20	8.8	
주관적 평가	70	67.80	
가격 평가	10	10	
합 계	100	86.60	
평가결과	적격/ 부적격	수의계약 적격 선정	

5) 평가의견(위원별)

- 김양현 평가위원 : 001사 조직체계와 시설 설비는 적절하나 프로그램 운영 기간의 적절성 및 홍보 방안은 보완되어야 하며, 타 기관 및 관련

기관(서울디자인재단 의류산업팀)과 교육 공간 공유 및 강사 활용을 통한 교육 특화가 필요. 포트폴리오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은 좋으나 수행 능력과 후원 유치·홍보·관리운영 부분에서는 보완을 통해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됨.

- 김용수 평가위원 : 001사에 대한 평가로 좀 더 봉제교육에 발전을 원한다면 의류제조를 배우는 교육생. 그들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인력부분에 있어 어떤 숙련공이 필요한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됨.

포트폴리오 평가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이 보이며 교육 프로그램에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선행되길 바라며, 효율적 운영을 통해 예산 대비 효과를 높이고,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협의 시 고려 대상임.

- 박정식 평가위원 : 001사 사양 산업으로 분류되는 의류제산업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목적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함. 하지만 청년 창업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커리큘럼 개발과 홍보, 수강생 유치가 필요해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디자인재단과 연계해 이름값을 높여 미래 발전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마케팅 접근이 필요하며 DB에 근거한 실적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협의 시 고려 대상으로 보임.

- 신현섭 평가위원 : 001사 청년 취·창업자의 적극적인 교육이 부족함. 서울디자인재단·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서울시 연계를 통한 더욱 알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사항임. 다년 간의 노하우 및 체계화는 좋으나 청년지원 부분에 있어 검토 확인이 필요함.

- 이상원 평가위원 : 001사 옷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이 대두 됨. 교육의 특성이 없음. 운영하는데 우수한 편이나 우수해서 안 되고 아카데미 또는 서울 디자인재단의 봉제교육에 대한 특성이 모자라 있다고 보며 추후 협의 시 고려 대상임.

- 이승주 평가위원 : 001사 “경영, 회계 관련된 교육들이 청년제작자 과정에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과 3D 입체 프로그램 교육과정으로 젊은 층 유입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여겨짐.
운영과 관리 부분에 있어 서울디자인재단에서 교육생들과 함께 해 교육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
- 이은석 평가위원 : 001사 전문적인 아카데미 기관으로 본 사업에 적합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며, 교육과 더불어 위업 연계까지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임.

나. 협상 내용

1) 협상일시 및 주요 내용

구분	1차(2.10)	2차(2.15)
참석자	재단: 신미선 책임, 최선운 선임, 홍성엽 선임 아카데미 : 김한영 이사, 김승일 과장	좌동
장소	재단 사무실 (유어스빌딩 4층)	좌동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 의견서 공유 및 제안서 수정 요청 ○ 수요자 중심의 교육 기획 및 청년창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커리큘럼 개발 요청 ○ 서울디자인재단과 연계 강화 요청 ○ 경영 회계 관련 교육 청년제작자 교육에 포함시킬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재단과의 협업 시스템으로 모집 및 훈련과정의 공동운영 체제 방안논의 ○ 지역 봉제거점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및 수강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통해 현장실습과 연계하여 취업률 제고하고 시대에 맞는 과정으로 기획요청 ○ 미남미녀프로젝트와 연계해 경영 회계 관련 교육 청년창업과정에 포함요청

구분	3차(2.20)	4차(2.27)
참석자	재단: 신미선 책임, 최선윤 선임 아카데미: 김한영 이사, 김승일 과장	재단: 신미선 책임, 최선윤 선임 서울시: 박주선 팀장, 송휘영 주무관 아카데미: 김한영 이사, 김승일 과장
장소	재단 사무실 (유어스빌딩 4층)	서울시청 문화융합경제과 (서울익스체인지빌딩 3층)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 예산확정에 대한 변동사항 및 협상 연장 논의 고용 및 창업 목표인원 논의 서울시 청년봉제인력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연계 요청 봉제업체 인식개선 새 지표 필요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수혜자의 청년비중 확대 및 봉제교육의 체계적인 기획으로 기술숙련과 사업연계 강화필요 봉제아카데미와 재단의 미남미녀프로젝트와 서로의 연계성을 강화해 재교육 및 기술숙련 극대화

III 협상결과

I 추진방향

가. 평가의견을 통한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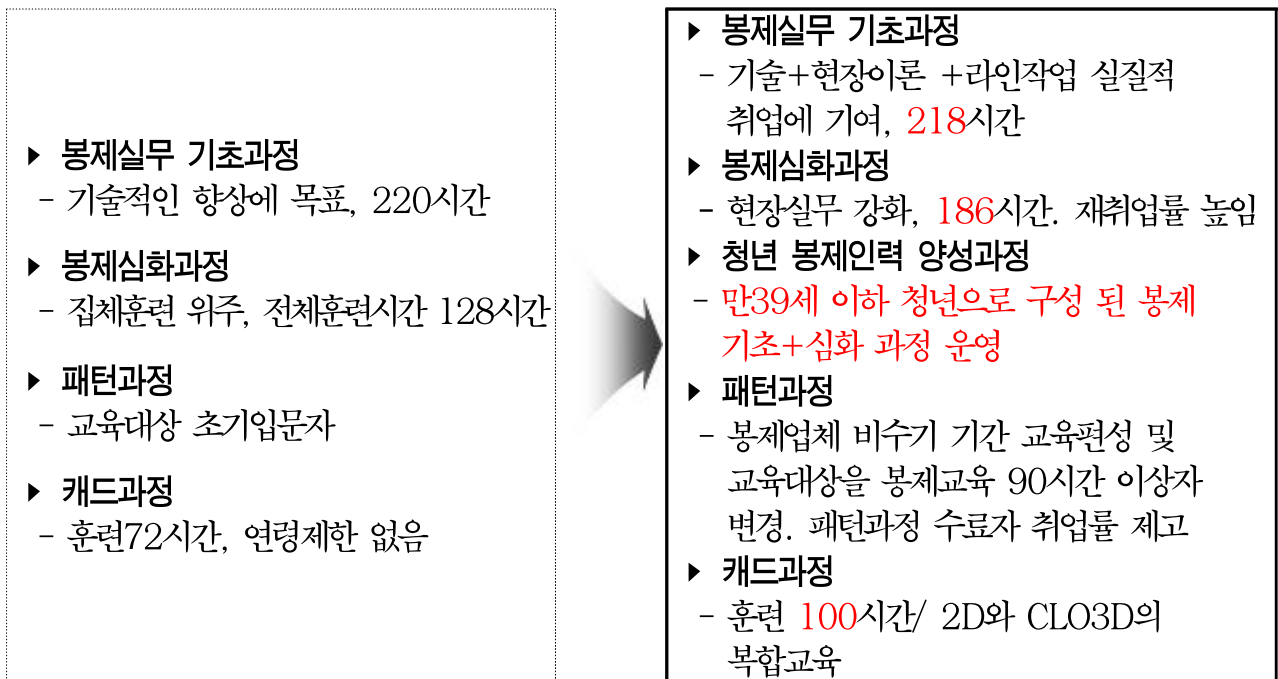
평가의견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	반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운영기간의 적절성 및 홍보방안 보완 수요자 중심의 교육 기획 청년창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커리큘럼 개발 필요 서울디자인재단과 연계 강화 요청 경영 회계 관련 교육 청년제작자 교육에 포함시킬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재단과의 협업 시스템으로 모집 및 훈련과정의 공동운영 체제 확립 (보도자료 배포, 공동홍보 등) 지역 봉제거점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및 수강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통해 현장실습과 연계하여 취업률 제고하고 시대에 맞는 과정으로 지속 수정 예정 청년창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커리큘럼 개발 필요 창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새 활용플라자, 지속가능 패션 허브 등 기관 협력 강화 미남미녀프로젝트와 연계해 경영 회계 관련 교육 청년창업과정에 포함

나. 주요 기관별 요청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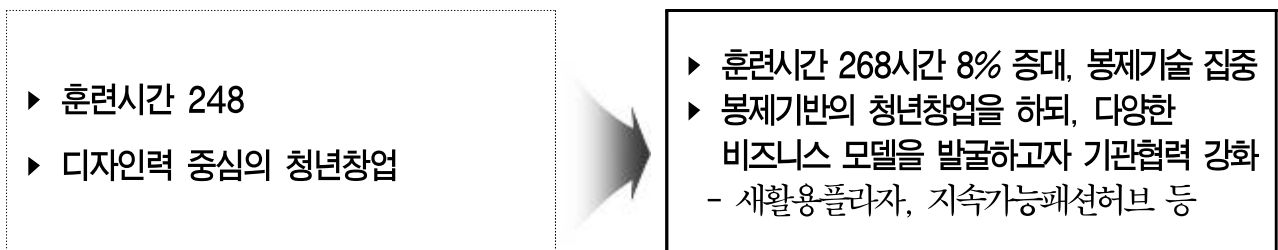
서울시	서울디자인재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수혜자의 청년비중 확대. ○ 봉제교육의 체계적인 기획으로 기술숙련과 사업연계 강화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제아카데미와 재단의 미남미녀프로젝트가 서로의 연계성을 강화해 재교육 및 기술숙련 극대화 ○ 일감연계프로젝트 등 재단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이라는 본질적 사업의 성과를 요청

다. 주요 개선내용

■ 고용연계



■ 창업연계



■ 사업연계 강화

- 고용노동부 연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봉제인력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연계해 고용 촉진
- 제작자양성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마스터 및 창업과정 추진
- 교육과정을 징검다리 형태로 편성해 최소 2년 이상 기술을 습득하고 창업할 수 있는 과정으로 기획

- 전년도 봉제실무과정 이수자 선택의 폭 확대해 장기적 기술숙련 가능토록 지원 (ex. 봉제실무심화, 패턴, 캐드. 미남미녀프로젝트)
- 봉제업체 비수기 기간인 7~8월을 활용해 패턴, 캐드 교육 실시

II 사업 추진 주요 내용

가. 사업목표 봉제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 고용 연계과정, 창업 연계과정, 청년 창업 연계과정 운영
- 교육 프로그램 과정 및 훈련 종료 후에도 상시 사후 취·창업 프로그램 구축

세부 목표	고용연계(65명)	창업연계(10명)
집중 훈련	봉제기술훈련+현장실습	봉제기술훈련+창업훈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봉제거점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실습과 연계하여 취업률 제고 ○ 봉제기술+현장이론+라인작업 등 실무강화 ○ 책임강사제, 전문강사제 시행하여 강의 균등 배분 보조강사의 기술 향상 주강사 진출기회를 제공 다양한 전문 분야에 따른 노하우를 전수 ○ [개선사항 (1)] 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와 서울디자인재단의 특수 기계 및 봉제실 공유로 훈련의 질적 향상 기대 ○ [개선사항 (2)] 서울시 청년봉제인력양성 및 고용지원사업 등을 연계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수혜를 홍보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제관련 청년창업을 위한 기술훈련 뿐 아니라 창업교육실시로 창업준비기간 단축 ○ 창업희망 청년들의 공동창업 지원 공방, 조합 개념의 단체 결성을 지원하고 추진하고 교육 중 사업자등록 발급을 통한 실질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 청년제작자만의 독자적인 훈련장소와 창업지원실 지원으로 훈련중이나 수료후 창업에 대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새활용플라자,지속가능패션허브 등 기관협력강화 ○ [개선사항] 디자인재단과의 협업 시스템으로 모집 및 훈련과정의 공동운영 체제 확립
훈련 과정	봉제실무 기초·심화과정 청년봉제 양성과정 패턴·캐드 과정	청년제작자 양성과정

나. 세부 프로그램

훈련 목표	훈련 과정		훈련 생수 (명)	훈련시간				훈련일시	교육 기간	현장실습	수준	
				주당 훈련 시간	월당 훈련 시간	총훈련 시간	훈련 월수					
고 용 연 계	봉제 실무 기초 과정	훈련장	15	16	64	188	3개월	월~목	14:00~18:00 (4시간)	4/10~ 7/13	7/3~ 7/7(1주)	초보자, 입문 과정
		현장		30		30	1주	월~금	10:00~17:00 (6시간)			
	봉제실무 심화과정	훈련장	15	16	64	156	3개월	월~목	14:00~18:00 (4시간)	7/17~ 9/28	9/18~ 9/22(1주)	중급, 심화 과정
		현장		30		30	1주	월~금	10:00~17:00 (6시간)			
	청년봉제 양성과정	훈련장	15	16	64	304	5개월	월~목	09:30~13:30 (4시간)	5/10~ 9/28	9/18~ 9/22(1주)	만39세 이하 기초·심화 과정
		현장		30		30	1주	월~금	10:00~17:00 (6시간)			
	패턴과정		10	9	36	120	3개월	월, 수, 목	14:00~17:00 (3시간)	6/29~ 9/28	-	기초, 중급 과정
카드과정		10	12	48	100	2개월	월, 수, 목	14:00~18:00 (4시간)	4/10~ 6/12	-	기초, 중급 과정	
창 업 연 계	청년제작자 양성과정		10	20	80	268	5개월	월~목	14:00~18:00 (4시간)	5/15~ 9/25	5/15~ 6/8(패턴) 6/12~ 8/21(봉제) 8/22~ 9/25(경영)	중급이상자 과정
합 계			75			1,226			당초계획 1,184			

다. 프로그램 마케팅

1) 대외홍보

- 사업중 일부 사례를 선택, 시기 및 매체에 대한 계획운영
- 교육설명회 개최, 홍보물 제작 배포, 젊은층 유입을 위한 SNS 강화
- 프로그램 및 훈련생 중 우수 사례를 선택, 언론 홍보

2) 의류제조기술훈련 및 창업교육 관련 대외홍보

3) 홍보물 제작 배포를 위한 활성화 방안 모색

4) 사업진행 관련 제작물 아카이빙 방안 모색

- 봉제실무교육 연계 고용 봉제업체의 홍보 콘텐츠 기획해
서울메이커스(www.seoulmakers.com)에 등재

5) 기타

-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과정에서 당초 예정된 일시 · 참여대상 등 변동이 생길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후 과업 수행
- 주간·월간·최종결과와 관련 해당 사안의 기간에 협의 진행 및 관련 사항 공유
- 월례보고(프로그램 진행 상황 및 결과) 월 1회
- 주간보고(프로그램 진행 상황 및 결과) 주 1회
- 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평가회의 1회 진행
- 최종 제출물(사업결과 보고서 및 사업 진행에 따른 자료) 일체, 용역 정산 보고
- 아카데미 고유사업 '봉제인 페스티벌' 개최(연 1회)해 교육 수료생 성과 홍보
 - 지역 마을공동체 및 지역 협의체와 협업, 지역 참여유도 활성화
 - 봉제 제작소품 판매 마켓 개최 또는 교육 프로그램 결과, 지역행사 개최(연 1회) ddp 플리마켓 연동 기획 검토요청

Ⅲ 과업 수행 시 준수사항

가. 과업 준수사항

구 분	내 용
기 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참가 대상 구성 및 선정방안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일정과 강의자 구성 방안 □ 봉제교육장 활성화 운영 방안 □ 교육전문 자문위원단 운영을 통한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운 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데미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다양 성을 통한 교육 활성화 □ 패션·봉제 분야의 활동 전문가 및 기업 정보 제공 □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제조업체·디자이너 매칭 연계 강화 방안 □ 교육장소 운영 방안
연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을 통한 사업연계 방안
홍 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 사이트 홍보를 통한 교육생 모집 및 유도 흡수 방안
협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협력 유지 및 활용계획 방안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보고서 및 홍보자료 원본 및 제작물 일체 제출(원가정산서 포함) □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지시하는 사항 포함 등

나. 사업수행 지침

□ 과업수행 지침

※ 본 과업지시서는 편의상 과업 지시자는 “발주기관”으로, 과업 수행자는 “계약상대자”로 칭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과업을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획 및 교육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기획 관련 논의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업 수행 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다만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상호협의를 조정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재단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의 효력

-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사가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②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③ 재단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④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히 늦어질 때
- ⑤ 과업수행과정 중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하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⑦ 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⑧ 계약서에 명시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과업 수행 계획에 의한 일정에 따라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용역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⑨ 당초 제안서 제출 시 업체 소개내용, 참여인력 경력, 사업실적 이행증명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 경우
- ⑩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상기 사항에 해당될 경우, 재단은 대행사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함은 물론, 선지급분이 있을 경우 대행사는 이를 즉시 반환 조치하고 계약해지 조치가 진행되며, 재단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용역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착수보고 지침

□ 착수 보고 지침

- 착수보고 시 내용 구체화 및 교육 참가 협력·일정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발생업무를 구체화하고, 해당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단계별 인력투입 및 교육운영 계획을 제시한다.
- 기획 인력 인건비, 교육생 수급 방안 공간 설계 계획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운영 계획 수립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착수보고 시 업무분장 및 역할 명시

- 사업의 질적, 안정적 관리를 보완 및 통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에듀케이터와 대표사(공동수급 시 협력사)의 역할 및 추진체계를 수립한다.
- 교육의 실행부분은 자체 전문 인력(조직)보유 또는 현지 전문 업체와 별도 컨소시엄 및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수행의 전문성 확보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사업의 활성화와 취/창업을 위해 사업 수행 시 재단의 요청에 의한 디자이너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위원회 또는 간담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수행 환경

- ① 본 사업의 목표 및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한다.
- ② 본 사업은 서울의 의류제조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근로환경의 인식개선을 위해 추진한다.
- ③ 본 협약서 협약내용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행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진행한다.

- ④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제출 사항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 협상서,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⑥ 본 사업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⑦ 인쇄 및 홍보 등은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제작 진행한다.
- ⑧ 각종 진행과정에서 전문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며, 작업 전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작업 추진시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 시 책임당사자에게 있다.
- ⑨ 본 사업 제안과 관련한 자료(사진, 데이터, 그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의 특허권, 저작권 등이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위탁업체가 해결하며, 본 계약 수행 중에 계약 당사자 간에 발행사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라. 기타

- ① 본 협상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 ②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중간업무를 서울디자인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 필요시 내용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상대상자는 서울디자인재단의 계약수행 과정에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
- ⑤ 모든 저작권, 소유권은 발주처(서울디자인재단)에게 있다.

본 협상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반영될 내용으로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2017.2.27.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근

(사)한국패션봉제아카데미
대표자 신종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17년도 봉제교육 및 사업·운영』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준용)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4.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준용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17년도 봉제교육 및 사업·운영』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9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

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기과 같다.

-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 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